

표준화정책

ITU基本法 改正 및 國內對應

— “누가 ITU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

김 은 주 박사

목 차

I. 序論：背景

II.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現況

1.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進行過程
2. 準備 草案班 1-2次 會議 現況
3. 準備 草案班 1-2次 會議에 제출된 각국의 기고문 現況

III.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主要 이슈 및 各國의 立場

1. ITU 構造調整의 基本方向
2. 分野別 主要 이슈 및 各國의 立場

IV. 現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未決된 이슈

1. 選出 職員의 任期 및 國籍
2. 地域(region)의 概念 定義
3. 概念을 정의한 附屬書 統合
4. 特定職員에 대한 呼稱의 中性化
5. 民間(private)이란 용어의 刪除
6. 憲章 및 協約의 效力 發生

V. 追加全權委員會의 暫定 議題

1. 改正 草案의 最終 決定
2. 開發局의 局長 選出
3. 論議될 세부 條項 및 이슈

VI. 提 言

I. 序論：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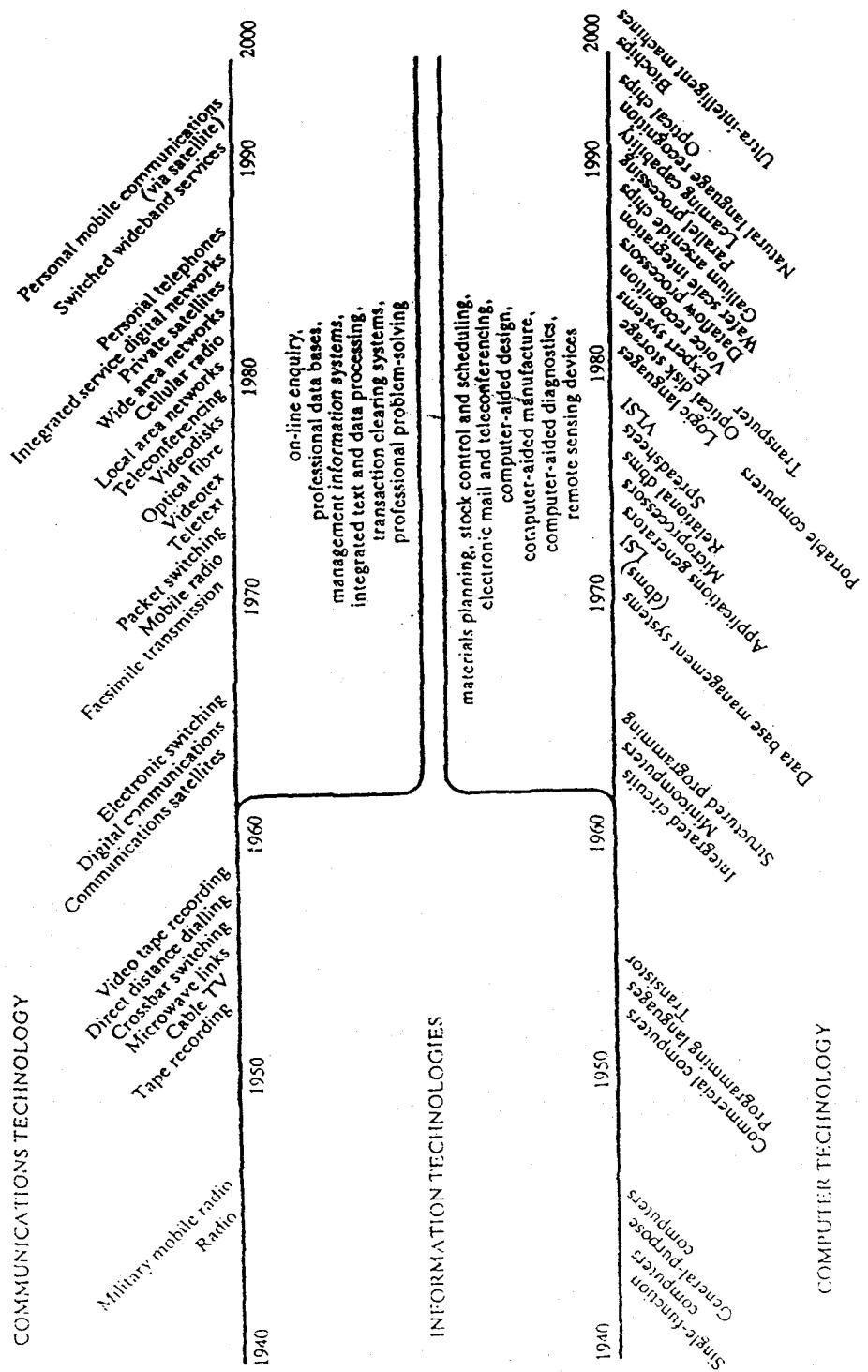
1880년대 電信에서 시작하여 電話, 無線으로 진화되어 온 전기통신 기술은 오늘날 <圖-1>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통신·컴퓨터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이루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범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160여개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 130년 동안 특정한 규칙 혹은 표준 등을 제·개정하면서 전기통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동분야에 관여한 사람 혹은 기관이면 누구나 한번쯤 접해본 機構名이며 많은 사람이 각종 ITU 관련 회의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韓國이 ITU에 가입한지 약 40년만에 관리이사국으로 선출되었지만, ITU의 구조 및 기능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ITU가 유엔 전문기구로서 정부간 기구이지만 급변하는 통신 환경속에서 정부(예, 외무부) 혹은 주관청(예, 체신부)뿐 아니라 통신운영업체(예, KT, DACOM 등) 및 각종 민간 제조업체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ITU는 현재 대규모적으로 그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의 계기를 시의적절하게 연구하고 이에 대비한다면, 과거와 달리 향후 ITU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ITU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기본 문제에 대한 答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ITU의 구조 개편에 관련된 일련의 會議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면서 문제의 접근하고자 한다.

〈圖-1〉 정보·통신·컴퓨터 기술 & 서비스의 진화



자료 : 김은주 OECD의 ICCP 위원회 활동 및 한국의 대응 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1. 12. P.155.

II.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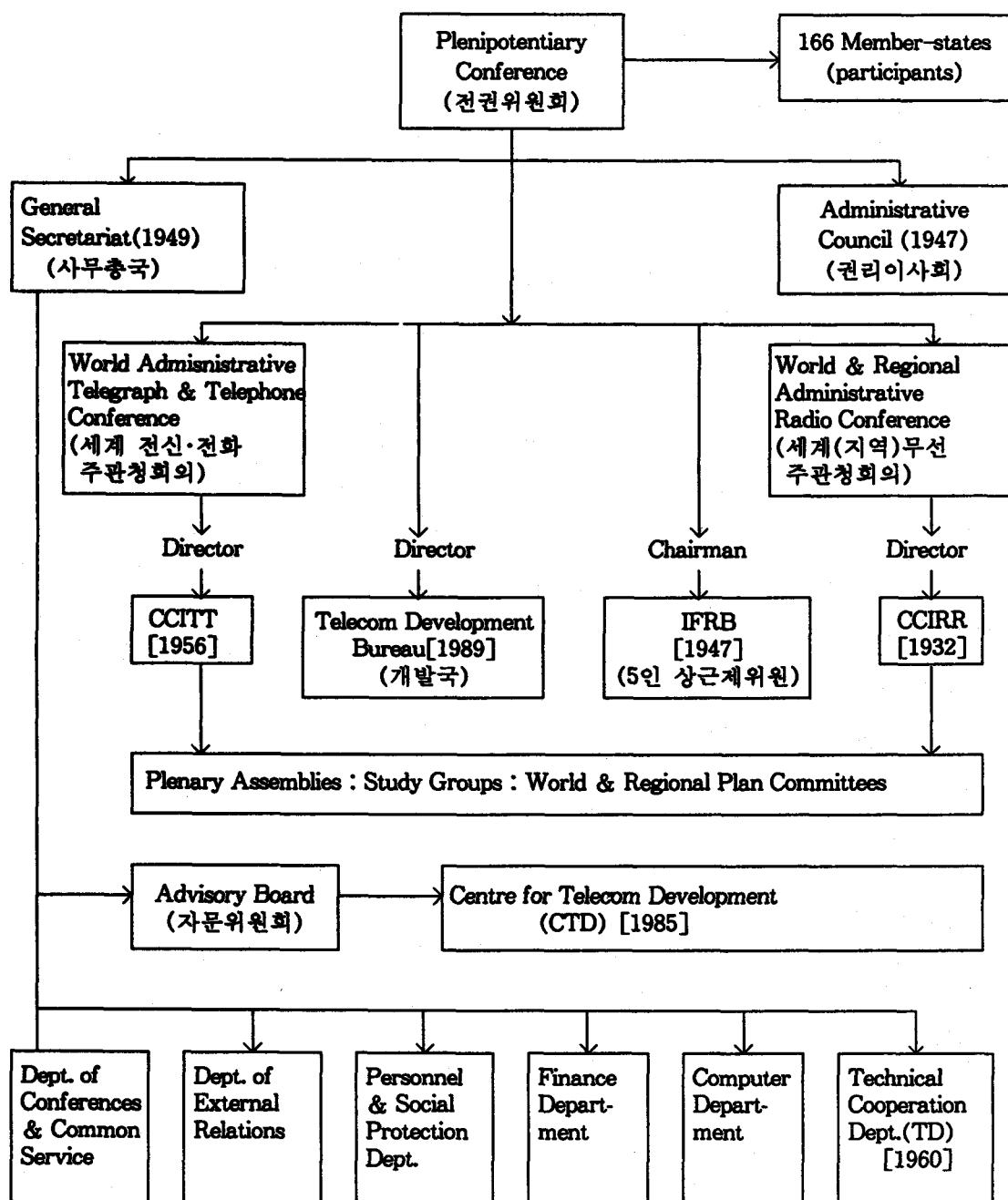
1.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進行過程

〈圖 -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술의 진화에 따라 각기 獨자적으로 신설·통합된 ITU의 산하기관(예, CCIR, CCITT, IFRB, BDT 등)을 無線通信, 電氣通信 標準化 및 開發 등 機能別로 분리·개편시키려는 작업이 현재 한창 진행중이다.

이러한 ITU의 구조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표 - 1〉에서와 같이, 1989년 Nice 전권위원회에서 ITU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고위위원회(High Level Committee : HLC)를 설립하도록 결의했다. 일련의 회의 및 각국의 제안을 토대로 HLC은 제46차 관리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동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이를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도록 1992년 12월 追加 전권위원회(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 APP)를 개최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APP의 진행을 돋기위해 ITU의 개정 헌장 및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준비초안반(Drafting Group of Experts : DGE)을 구성하였고, 동 DGE는 HLC의 권고에 기초하여 2차례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APP에 제출할 개정초안(Chariman's Draft for a revised Constitution & Convention)을 검토·준비했다.

〈그림-2〉 ITU의 현행구조



자료 : 김은주,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 구조조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1. 12.

〈표 - 1〉 ITU 구조조정 관련 회의 및 활동

날짜	회의	주요내용
1989.5 - 6	Nice 전권위원회	ITU 구조조정을 검토하도록 결의 HLC 구성
1990. 1 - 1991. 4	HLC 1 - 5차 회의	ITU 구조조정의 기본틀 제시
1991. 5	제 46차 관리이사회	HLC 권고를 이행할 APP 개최결정 APP 준비를 위한 전문가 초안반 (DGE) 구성 결의
1991. 12 - 1992. 3	DGE 1 - 2차 회의	개정될 ITU 협장/협약 초안 작성
1991. 4 - 6	지역별 설명회	ITU 구조조정의 배경, 경위 및 진행 결과를 分野別(무선통신, 표준화, 발전)로 설명 : 회원국간의 의견 교환 및 수렴
지역	국가 (도시)	날짜
미주	Mexico(Acapulco)	4월 9 - 10일
아프리카	Morocco(Marrakech)	5월 4 - 6일
유럽	Swiss(Geneva)	6월 11 - 12일
아시아	Indonesia(Yogyakarta)	6월 18 - 20일
1992. 6. 29 - 7. 10	제47차 관리이사회	초안반 회의 결과 검토 : 지역별 설명회 결과 검토 외
1992. 6 - 12	사무총국	각 회원국에서 제출된 제안 접수 및 분배
1992. 12. 7 - 22	APP 개최	개정안 검토·결정

2. 準備 草案班 1-2次 會議 現況

고위위원회(HLC)의 의장(Mr. G. Warren : 카나다)이 APP 준비 초안반의 의장을 연임한 등 초안반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0개 회원국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동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주로 법률가, 각 주관청의 행정가, 각 국가의 외무부 직원 및 관계 연구원 등이었다. 또한, ITU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문위원회(CCIs)의 국장들, IFRB 위원들 및 본부의 법률 자문관과 관계 직원들이 회의 진행을 도왔다.

한편,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제1차 회의에 참여후 중요성 및 전문성을 인식한 일부 국가에서는 2차 회의에 전문가의 수를 증가하여 첨석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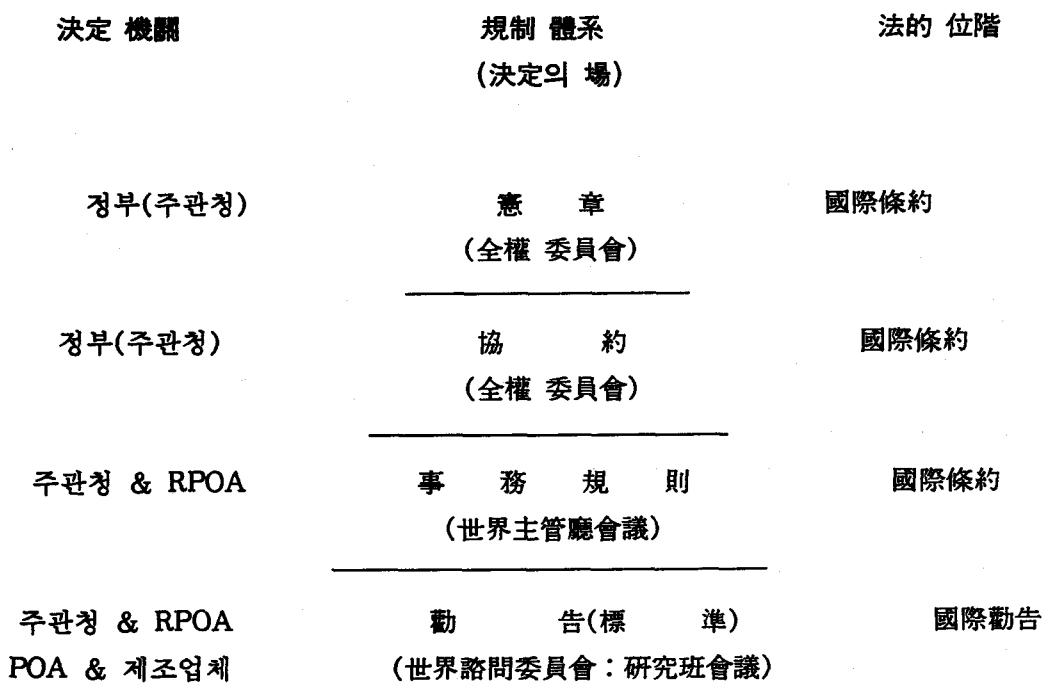
〈표-2〉 準備 草案班 1-2次 會議 參加자 현황

참 여 국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독 일	1	3
사우 디아라비아	1	1
호 주	1	2
브 라 질	1	불 참
카 메 룬	1	1
카 나 다	3	3
중 국	1	1
콜 르 비 아	1	1
한 국	1	1
덴 마 크	1	1
에 스파 니 아	1	1
미 국	4	5
이 디 오 피 아	1	1
프 랑 스	3	3
인 도 네 시 아	7	8
이 탈 리 아	1	1
일 본	3	4
케 냐	1	1
쿠 웨 이 트	1	1
레 바 논	1	1
모 로 코	1	1
멕 시 코	2	2
노 르 웨 이	1	1
네 덜 란 드	1	1
영 국	1	1
스 웨 텐	1	1
스 위 스	1	1
탄 자 니 아	불 참	1
체 코슬라바키아	2	2
태 국	1	1
러 시 아	1	1
30 개 국	4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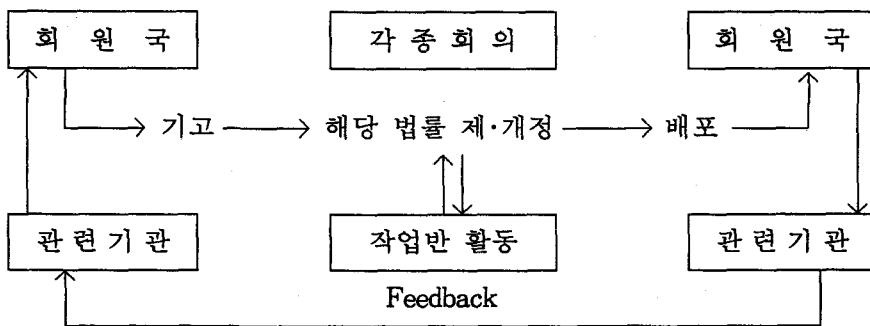
3. 準備 草案班 1~2次 會議에 제출된 각국의 기고문 현황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ITU는 단순히 정보 교류의 场이라기 보다는 <圖-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의 다른 차원의 국제 법률(예, 협약, 규칙, 권고 등)을 제·개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정한 법률 혹은 조항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 혹은 이해를 반영시키고 그 결과를 각국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圖-3> 相異한 次元의 ITU 規制 體系



즉, 특정 회의 혹은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를 기초로 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고문(Contribution)을 제출하게 되면, ITU 사무국에서 문서(Document)로 채택하여 영어·불어·스페인어 등 공식언어로 번역하여 회원국 혹은 특정 회의의 참석자에게 배포하게 되고(예, Document), 회의의 결정과정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약 혹은 표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회의—즉, 특정 법률의 제·개정 및 승인 과정—도중에 특정한 조항 혹은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울 경우 참석자 가운데 특정 대표를 즉시 지명하여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시켜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각 작업반이 토의 혹은 연구를 하여 제출한 결과를 문서화(예, Dt.)시켜 적절한 회의중에 배포·재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1~2차 회의에 제출·채택된 기고(Documents & Dt.)들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제1~2차 초안반 회의에 제출·채택된 각국의 기고문

제 1 차 회의	제 2 차 회의
會議 開催前 寄稿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Document 6) 한국(Document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Document 12) 일본(Document 13)
會議 開催中 寄稿	
<ul style="list-style-type: none"> Dt. 채택된 회원국의 기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DT. 3; 9; 13) - 3件 카나다(DT. 4; 15) - 2件 노르웨이(DT. 5) - 1件 미국(DT. 6; 11) - 2件 모로코(DT. 7; 8) - 2件 캐나다(DT. 10) - 1件 독일(DT. 12) - 1件

III.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主要 이슈 및 各國의 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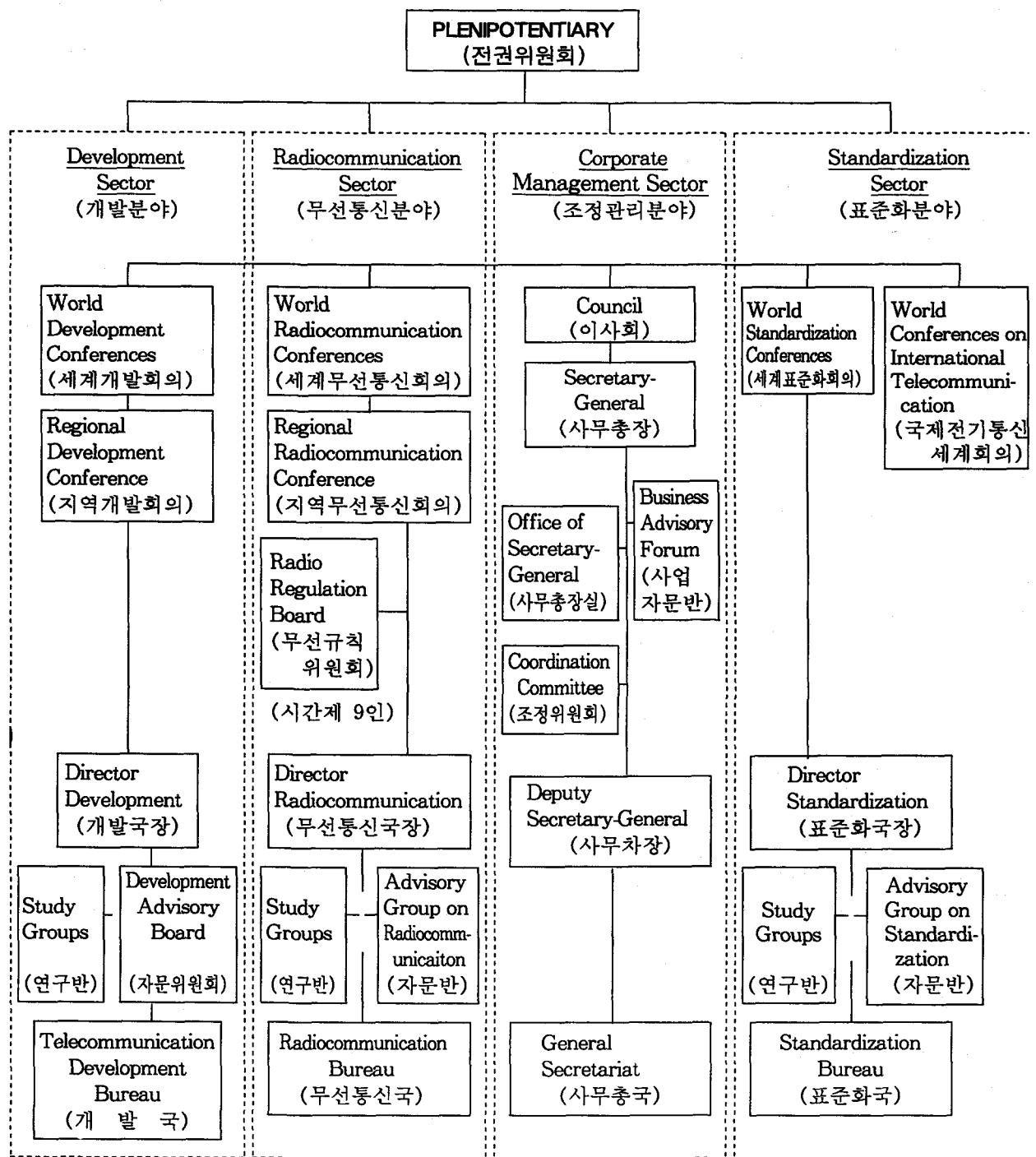
1.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基本方向

APP 準備 草案班(DGE) 會議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고위위원회(HLC)가 검토·권고한 ITU의 개편될 기본 구조 및 기능을 간략히 요약 및 도식화 하면 각기 다음 〈표-4〉 및 〈圖-4〉과 같다.

〈표-4〉 개편될 ITU의 구조

- 無線通信 分野(Radiocommunication Sector)
 - 무선통신 분야의 규칙 기능을 담당하던 기존의 세계자문위원회(CCIR) 기능의 일부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를 통합.
- 標準化 分野(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Sector)
 - 기존의 2개 세계자문위원회(CCIR, CCITT)를 통합.
- 開發 分野(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Sector)
 - 개도국의 기술 원조를 위해 1985년 신설된 CTD와 1989년 신설된 BDT의 기능을 통합 및 강화.
- 事務總局(General Secretariat)
 - 本局 산하에, 새로운 기관들을 신설하여 사무총장의 권한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提高.

〈圖-4〉 개정될 ITU의 조직도



2. 分野別 主要 이슈 및 各國의 立場

2.1. 無線通信 分野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무선통신 분야의 개정에 대한 각국간의 의견일치가 어려웠다. 그 주요 이유는 단순히 기존의 CCIR과 IFRB의 구조를 통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 분야의 기능이 국제조약 차원의 無線規則(Redio Regulations)과 국제표준 차원의 勸告(Recommendations)을 동시에 제·개정할 뿐 아니라, 5인의 상근제 선출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IFRB를 9인의 시간제 선출 위원으로 구성될 무선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로 개편한 것에 대한 찬·반론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동 분야에 대한 논의의 진행배경 및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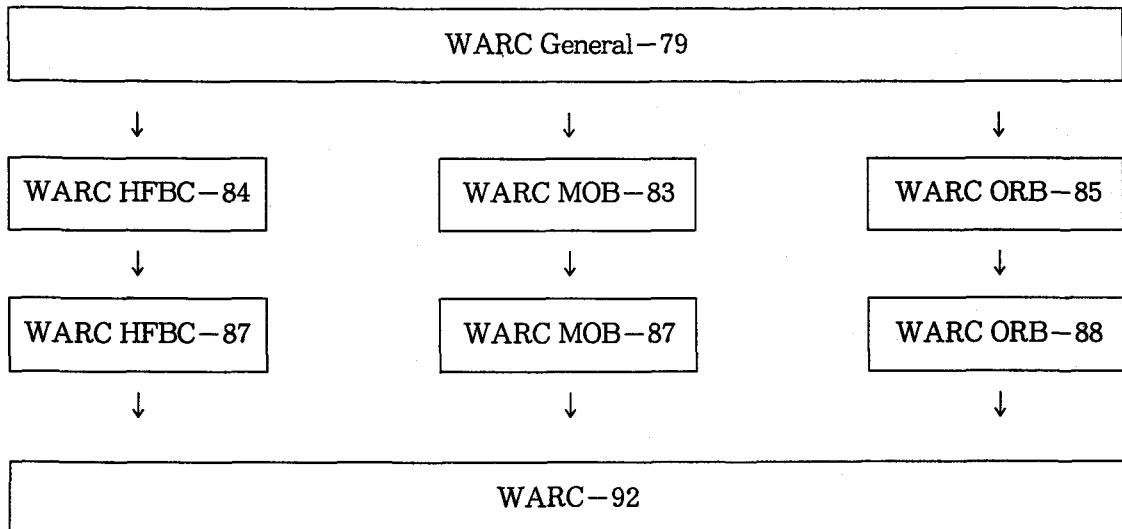
세계무선통실회의(WRC)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 분야는 크게 세계 및 지역 무선통실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매2년마다 개최될 세계무선통실회의는 다시 기존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WARC)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총회(Plenary Assembly)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조정의 배경에는 동 분야의 기술발전과 ITU 자체내에서 관련업무를 분야별로 재정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고, 매 4~5년 주기로 개최되었던 각 회의를 2년 주기로 개정한 주요 이유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주제별로 필요시 개최하던 WARC의 방대한 업무량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 5~6周씩 개최하던 회의 기간도 단축하자는는데 있다.

제1차 초안반 회의에서는 오랜 토의를 거쳐 동 WRC내에 무선통신위원회(Radiocommunication Committee)를 추가로 구성하여 무선통신에 관련된 업무 및 권고를 승인하는 CCIR 총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의했다.

〈표-5〉 역대 개최된 WARCs



- WARC HFBC : 방송업무에 분배된 단파대의 계획작성에 관한 WARC
- WARC MOB : 이동업무에 관한 WARC
- WARC ORB : 정지위성궤도의 사용 및 이 궤도를 사용하는 우주업무의 계획작성에 관한 WARC

(자료 : WARC-92에 따른 각국정책파악 및 대응방안수립 통신개발연구원, 1991.12, p.6)

그러나, 언급한대로 WRC는 CCIR의 총회뿐 아니라 기존 WARC이 하던 무선규칙의 제·개정 및 주파수 분배 등의 문제도 취급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조약을 취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정부로부터 제출되는 신임장을 취급하는 신임장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 이외에 여러 다른 위원회(예, Steering Committee, Editorial Committee 등)의 명칭 및 구조적 위계상의 문제들이 불분명하여 각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차 회의후 일부 대표들이 추가로 회의를 갖은 후 의장이 기존 WARC의 기능을 담당하는 회기(Administrative/Regulatory Session)와 CCIR총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회기(Technical/Consultative Session)로 구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각 기능에 적합한 명칭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용어자체의 포괄성과 기존 기능의 존속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회의에서 한

국은 ‘관리(Administrative)’ 및 ‘자문(Consultative)’ 회기라는 명칭을 선호했고, 영국은 각 회의의 성격상 ‘관리(Administrative)’ 및 ‘기술(Technical)’ 회기의 명칭을 선호하는 등 각국의 의견이 상충되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회기(Session)’라는 용어 자체도 동 회의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여 오랫동안 IFRB의 위원을 지낸 후 동 회의에 모로코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한 Mr.Berrada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추가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 <표-6>과 같이 WRC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타협을 보았다.

<표-6> 세계무선통실회의(WRC)의 구조 및 주요기능

회 의 종 류		참 석 자	주 요 기 능
Plenary Assembly		주관청 및 RPOAs외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총괄
상 설	Radio Regulations Committee	주관청 대표 중심	규칙(RR) 제·개정; 주파수 관리 및 분배
	Technical Committee	RPOAs/민간업체 중심	권고승인; 연구반의 과제선정, 재구성, 방향설정
일 반	Steering Committee	의장 및 부의장 중심	회의 진행절차 논의
	Credentials Comm.	각 국의 수석 대표	신임장 제출
	Editorial Comm.	수시 지명	규정 원문 교정
Working Groups		필요시 편성/수시 지명	특정 지명된 과제

상기 결정에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한바 대로 ‘Committee’라는 명칭하에 동 회의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 위원회가 취급하는 기능의 중요성 만큼 각국이 비중을 두고 회의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겠는가 하는 점과, 개도국과 같이 소수의 대표단을 보낼 경우 과연 다수의 각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전문적인 회의에 참석·이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여러 의견이 제출될 가능성성이 많고, 이에 우리나라로 대응 가능한 범위 및 방안등을

검토하여 아국의 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무선통신회의(RRC)

개정 초안에는 각 지역별로 무선통신에 관련된 이슈를 취급하게 될 RRC의 개최 시기, 장소, 방법, 종류등을 규정한 관련 조항이 없고, 두지역 회의간에 중복되는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가를 언급하는 적절한 조항이 없어 韓國은 이 문제를 지적·명시하도록 제안했고 또한 반영되었다.

무선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인해 기존 IFRB의 업무가 기계적이기 때문에 많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근제 직원을 ITU본부에 상근시키는 것보다 필요시 정규 모임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초로, 기존 선출된 5인의 상근제 직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주파수 등록 및 교란 방지 기능을 다루던 IFRB가 무선통신분야의 산하에서 9인의 시간제 직원으로 연4회 정기모임을 통해 관련 업무를 다루게 될 RRB로 개편하게 된다.

개편될 RRB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중국 등 아직 많은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① 형평성 및 객관성 문제 : 상근제 국제 공무원의 자격으로서도 국가간 이해에 관여된 특정 문제가 야기될 경우 출신국을 의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시간제로서 특정한 모임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성격으로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② 인원수의 문제 : 현 IFRB는 미주·동유럽·서유럽·아프리카·아시아등 5개지역을 대표하는 5인제로 선출되고 있는데, 9인제로 할 경우 각 지역별로 몇명씩 선출해야하는 지의 여부;
- ③ 비용-효과 문제 : 연4회 정기 모임 외에 개정안에 규정한 대로 이들위원이 관련된 각종 ITU회의에 참여시 소요경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 시도했던 비용 절감 문제는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정하기 곤란하다.

1947년 IFRB가 처음 설립되었을 경우 11인이었고, 설립 당시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IFRB의 권한이 크지 못했고 또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IFRB의 해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간 정치적 힘의 형평성(balance of power)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즉, 정치·외교적인 직책인 사무총·차장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CCIs의 위원장의 직책에 개도국이 선출된다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ITU의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숫자가 선진국의 숫자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투표력이 우수한 개도국이 자국의 대표를 ITU의 고위직에 선출시키기 위한 유일한 기관이 바로 IFRB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RRB의 선출 인원수 및 방법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資質은 물론 각 지역과 성별등에 기초한 균형있는 분배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안했다.

- ① ITU에 의해 규정된 현행 5개로 구분된 지역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 ② 현재의 5개 지역이 유지된다면, 동등한 지역적 및 민주적 분배에 기초한 공정한 대표의 선출을 위해 위원의 숫자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시키고,
- ③ 위원의 선출 방법 또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자문반(Advisory Group)의 구조 및 기능

각 분야의 자문반의 급번 ITU의 구조 및 기능 개편을 통해 새로이 신설되는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주관청 뿐만 아니라 주로 민간·대기업의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관련 민간기업에게도 개방되고 최종 참여자는 각 국장이 지명하게 된다.

개편될 ITU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면 機能별로 분리된 각 分野마다 독자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나, 기술의 발전 및 협조 차원에서는 각 분야간의 협조·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문반의 기본적인 특성은 각 분야의 연구반 활동의 기본방향 설정에 자문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무선통신 분야의 자문반에 대한 기능으로서 ‘표준화 및

발전분야와 밀접히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제안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무선통신 및 표준화 분야의 자문반 회의에 참석은 하되 의장(Chairman)직을 반드시 국장이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동의를 얻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회원국으로서 ITU의 각 분야별 局長들의 지위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2.2 電氣通信 標準化 分野

ITU의 구조 및 기능을 대폭 개정시키게 된 주요 동기는 무선 및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및 접목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그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표준화 분야—즉, CCITT 및 CCIR—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실제, 전신·전화·라디오등의 기술이 진화됨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기 신설된 양 CCIs의 통합론은 1960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 Butler가 사무총장직을 사임할 무렵 각국을 방문하면서 일련의 연설을 통해 설득한 결과 1989년 Nice 전권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CCIs를 포함한 ITU 전체 구조개편 작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 분야는 기존의 CCITT 표준화 활동과 CCIR의 일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통합시켜 주로 勸告(표준)를 제·개정하며, 매4년 주기로 개최하게 될 세계전기통신표준화 회의는 기존의 CCITT총회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표준화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지역회의가 없고, 기존의 Plan Committee 및 GAS의 활동도 신설되는 발전분야로 이전된다. 특히, 민영화 및 국제화 등의 통신 정책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주관청(舊, PTT) 중심에서 人的·物的 資源이 많은 운영체(RPOAs) 혹은 민간 제조업체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표준화 연구의 향후 정책·전략을 수립하여 연구반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局長을 보좌하게 될 諮問班(Advisory Group)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 및 지역별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및 지역 표준화 기구(예, T1 Committee, TTC, ETSI등)가 등장하고, 전자·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 기구들(예, ITU, ISO, IEC)의 활동이 증복·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ITU를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연구 주제 선정 및 조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심이 표준화에 집중됨에 따라 개정될 ITU헌장 및 협약의 관련 조항들이 간소화되었고 초안반 회의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특별한 異見이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조항에 함축된 의미 및 배경을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선진국의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도의 기업표준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여러 선진국의 기업들로부터 수입한 기술 표준 및 제품에 불가피하게 종속될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의 제품을 상호 호환시키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ITU의 국제표준은 국내표준을 자체적으로 개발·제정하기 어려운 많은 개도국에게 보다 더 필요하며, 실제 ITU표준은 많은 국가에서 국내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ITU의 표준화에 참여하고 실체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원국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극히 일부 국가 혹은 그들 기업에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CCITT 위원장은 다른 표준화 기구의 신속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CITT-즉, ITU의 표준화 분야-도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일부 선진국의 업체(예, Motorola, AT&T등)들은 CCI-TT의 표준화 과정뿐 아니라 각종 국내·지역 표준화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그들 기초로 보다 고도의 자체기술, 서비스(예, IRIDIUM),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예, 한국)가 원하는 표준을 자유자재로 공급 및 기술이전을 위한 훈련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업체 홍보를 위해 각 국가에 개별 방문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업체들이 인식하고 이에 서둘러 대응해야 하겠다.

한편 유럽에서도 최근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관련 표준화기구(예,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CEN);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CENELEC);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TSI) 등)들이 시장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 및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사실, 1950~60년대가 군사력에 의해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 시기였다면, 1970~80년대는 경제력, 그리고 1990년대 그 이후는 - 적어도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 각국의 技術力에 의해 경쟁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는 장·단기적 국내·외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제 표준에 대한 민간업체의 인식과 참여가 미약하고 운영업체 역시 참여 및 관리에 미숙함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관련기관 및 개인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TTA를 중심으로 1992년 1월 CCITT위원회를 초청하여 CCITT 및 각종 관련회의에 寄稿하는 방식과 회의에 참여·발표·타협·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강의에 참석했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CCITT 및 관련 표준화 회의에 일관성있게 참여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자체 기관 및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부 노력은 소용이 없다.

標準化 諮問班의 構造 및 機能

제1~2차 초안반 회의에서 개편될 ITU의 구조 및 기능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은 표준화 및 무선통신 분야에 신설될 자문반(Advisory Group)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표준화에 대한 연구·승인을 하게될 연구반 작업의 우선순위, 전략 및 진행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를 검토하게될 자문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반의 설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서로 상이했고 이에 따라 회의 전후로 많은 논의가 계속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문반이란 局長을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각 사무국(Bureau)에 귀

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한국은 자문반이 국장에게 귀속되고 일부 선진국 업체들에 의한 폐쇄적인 기관이라면 이의 신설은 개도국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외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국장의 자문기관이란 성격보다는 연구반의 작업에 자문을 하는 공개된 기관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오랜 토의 끝에 한국의 주장대로 개정초안에는 자문반이 연구반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멕시코의 우려대로 해당 국가의 주관청 및 민간 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타협을 통해 그 위상을 정립해 놓은 자문반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 표준화 기구’의 개념 정의

韓國이 표준화 분야에 전략적으로 추진하려했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ITU의 개정을 이용하여 현장 혹은 협약의 부속서에 ‘지역 표준화 기구’라는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은 프랑스의 대표와 공동으로 제1차 초안반 회의에서 ITU는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표준화 기구들의 활동을 고려하여 이들과 협조를 해야한다”는 항목을 추가시켰고, 현장 111D항에서 언급된 지역 표준화 기구들의 중요성과,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표준화 기구들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전기통신 표준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2개국이상 회원국의 기관들로 구성되는 기구”라고 현장의 부속서1에 개념을 규정짓도록 제안했다.

그 주요 動機는 전술한 대로 선진국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지역 표준화가 등장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직 의도한 만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국내 표준화기구(예, TTA) 활동에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지역 표준화 기구인 ETSI의에도 관련기구와 표준화 문제를 총괄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1991년 CCITT의 구조 및 조정에 관한 이슈를 주제로 한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ITU로 하여금 T1 Committee에게 현재 지역 표준화 기구로서 유일한 ‘Observer’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

는 ETSI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주도록 제의를 했다. 그 제안이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T1 Committee는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 될수록 ITU에서의 위상정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카나다를 비롯하여 멕시코등을 추가로 참여시켜 미주지역의 지역(bloc)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내 표준화 기구인 일본의 TTC는 기술 수준의 차이 및 관련업체간의 경쟁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의 TTA와 공동 연구 체계확립 혹은 아·태지역에서의 표준화 기구의 신설에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준화의 지역화가 가속화되어가는 현실속에서, 한국은 TTA를 중심으로 쌍무적으로 TTC 와 아·태지역의 관련 표준화 기구들과 협력 체계를 추진하는 한편, ITU에서 T1 Committee의 위상정립을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 표준화 기구’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TTC 혹은 T1 Committee로 하여금 한국과 협력 관계를 제고시키던지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서의 지역 표준화 기구 설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내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기관(예, 체신부, 민간업체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데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즉, 물론 TTA를 통해서 이겠지만 민간업체가 체신부의 승인없이 정부간 기구인 ITU 활동의 참여를 쾌히 수용하겠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ITU의 입장 역시 ‘지역’이라는 개념이 ITU의 기능상 언제인가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지역 표준화 기구’라고 할 경우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뿐 아니라 정치·군사·기술·문화적인 개념이 합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견해였다.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 및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내적으로 TTA를 중심으로 쌍무적으로 TTC의 아·태지역의 관련 표준화 기구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해야 하는지, 지역화로 탈바꿈해가는 T1 Committee 혹은 자체기술력을 겸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他機構에 적응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TTC에 귀속하여 계속 兩國의 기술에 의존해야만 할지 등에 대해 각기관의 입장 수렴 및 관련 국내외 표준화 기관의 계획을 분석·수렴하여 1992년 추가전권위원회 혹은 1994년 정기전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무선통신 및 전기통신 분야의 표준화 기능 정립

제2차 회의의 또 다른 주요 문제들로서는 CCIs의 통합에 따른 무선통신과 전기통신 분야의 표준화 연구 영역 분리·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반 구성 및 운영 문제는 APP 이후 개최될 각분야의 세계회의 혹은 관련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각 주관청 및 관련기관은 향후 몇년 동안 각종 CCITT 혹은 표준화 회의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에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 電氣通信 開發 分野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의 구조 및 기능

전기통신 개발 분야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표준화 및 무선통신 분야 자문반의 성격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① 자문위원회는 연구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 ② 개도국의 통신발전을 위해 개발국장에게 자문을 제시하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됨으로써,
- ③ 다른 분야의 자문반이 연구반과 동일 혹은 보조적인 차원에서 조문화된 것과 비교하여, 자문위원회는 주로 사무국(Bureau)의 국장을 보좌 및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다.

그러나, 개정될 의장의 초안(CV128S~U)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설립하여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韓國이 문제를 제시했고, 이에 멕시코가 동의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ITU의 법률자문가인 Mr.No11과 CCIR의 위원장인 Mr.Kirby의 자문을 얻어 128S~U의 항들을 하나로 통합(예, 128S)하였다.¹⁾. 개정 및 추가한 주요골자는 동 자문위원회는 국장이 설립·의장직을 맡으며 위원들은 사무총장과 의논하여 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1) 1CV128S "A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Board shall be established and chaired by the Director, who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at Boar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The Board shall be composed of individuals with particular interest and expertise in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Board shall advise the Director on priorities and strategies in the Union's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ctivities; it shall, inter alia, recommend steps to fost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equally interested in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Dt/3, AC Res.1021)

로 결의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국장이 지명하기보다는 선출을 하자고 제의했으며, 이 문제는 1992년 6월 18~20일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지역회의에서 재론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전에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동 위원들을 선출하여 그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선출해야 할 직원(5), 위원(9), 그리고 이사국⁽⁴³⁾의 數가 상당히 많은 ITU의 제도적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선거로 구성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선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커다란 영향 및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은 국장이 지명·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2.4. ITU 行政 및 調整 分野

事務總長室의 強化

HLC勸告 8-12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실내에 ITU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될 기획조정과(SPPU)와 민간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사업자문단(BAF)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현대의 전기통신 자체가 고도의 기술 및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과 민영화되는 정책적 변화 등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에 ITU 및 ITU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만큼 전기통신 분야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은 IT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SPPU의 신설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이미 설문지를 통해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나치게 사무총장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특히, 개정될 헌장과 협약에 대한 의장의 개정 초안에서는 신설되는 兩機關의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1차 초안반 회의에서 “헌장과 협약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兩機關의 구조와 기능을 명시하고, 자질, 지역적 분배, 숫자, 성별 등과 같이 兩機關의

직원이나 회원을 임명하는 특정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무총장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기에 전에 모든 회원국에게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사업자문반에 관련하여 “그 회원이 자유로이 구성된다면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선진국의 대기업 고위관리로 구성될 것으로, 그 구성원은 참가자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ITU에 균형잡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비율과 규칙에 기초하여 개도국들도 그 회원이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서 ITU의 권한 확대를 견제해야 할 일부국가(예, 미국)들이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자문반의 구성원이 주로 이들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SPPU 및 BAF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안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실의 구체적인 구조를 현장과 협약 차원에 조문화시키는 것은 기본법 간소화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管理 内規’에 반영시키겠다는 사무총장의 언약으로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무선통신 및 표준화 분야에서 ‘자문반’의 위상을 제고시켜 조문화시키게 되자, 제2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사업자문반(BAF)’의 기능도 차후 조문화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총국은 기존의 법률자문, 대외 홍보 업무와 더불어 ITU 자체적인 전략 및 기획, 그리고 민간업체들의 고위 간부급들로 구성될 자문반을 설치·운영하게 되며, 현 TELECOM행사 및 세미나의 활동도 관장하게 된다. 한편, 각 분야의 기능을 총괄하게 될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의 기능도 보강하게 된다.

이처럼, ITU가 자체적으로 전략 및 기획을 수립하여 회원국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점이다. 즉, 일반 국제기구의 주체는 회원국이며 회원국—특히, 일부 선진국—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를 하여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민간 업체의 경영자들을 ITU의 품안에 유인하려는 시도는 정부 주관청의 주도하에 진화되어온 ITU 자체적 특성뿐 아니라, 다른 정부간 기구 및 유엔 전문기구와의 성격과 비교한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管理理事會

기존 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의 명칭을 이사회(ITU Council)로 개칭하면서 ITU의 ‘집행기관’이면서 단순히 일반정책 뿐아니라 ‘전략적 정책 및 기획 수립’의 기능을 하게되고, 예산도 1년에서 2년 주기로 편성함으로써 좀더 자치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기본원칙은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기본법의 규정을 간소화시키자는 것으로 제2차 초안반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었고, 차기회의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기본조항을 간소화시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각 조항이 함축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 생략되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

ITU활동의 參與 資格

ITU 구조 및 기능의 조정 과정에 주목해야 할 이슈중에 하나가 바로 개편될 ITU의 각종 회의 및 기관에 참여하게 될 기관들의 성격 및 자격등에 대한 문제이다. 즉, 민영화 및 개방화등 전기통신 정책이 변모함에 따라 주관청 이외에 서비스 운영업체 및 민간 제조업체들에게로 ITU의 참여 자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주관청과 다른 운영업체 및 제조업체와의 差異를 표명하기 위해 “회원국(Member)/주관청과 他 참여기관을 지칭하는 회원(member)사이의 개념을 부속서에 정의”하자는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Dt/12) 독일의 주장대로 부속서에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규정에 ‘Member’와 ‘member’의 차이를 명시했다.

ITU勸告(Recommendation)의 名稱

<圖-1>의 법적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장(Constitution), 협약(Convention), 규칙(Regulations)과 함께 ITU의 권고(Recommendation)는 국제표준(즉, CCITT표준)으로 가장 널리 인식·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ISO 및 IEC등 다른 국제 표준화 기구의 권고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ITU Recommendation’이라고 개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議長의 의견을 동일국적의 카나다 대표를 통해 제2차 회의에 제안(DT/15)시켰고, 이에 대해 많은 대표들이 동의를 했다. 그러나 동 회의의 진행 시간이 부족하고 일일이 조항을

검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APP에 전의·제출하는 것으로서 일단락지었다.

分擔金 문제

ITU의 회원으로서 각종 ITU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능력 및 自意에 따라 일정 단위의(예, 1/16~40Unit)분담금을 제출하여야 하며(협약 26조), 비회원국으로서 CCITT의 연구반 회의 등 부분적인 활동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특별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표준화 및 무선통신분야에는 회원(국)이 아니면서 동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기관에게 특정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위의 분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신설되는 개발분야에는 선진국이—특히 참여 및 분담금의 지불이 요구되는 민간업체—특정한 이윤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협조 혹은 원조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될 터인데 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분의 분담금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들 기관의 참여를 억제시킬 가능성이 있음도 논의했다(Dt/17).

IV. 現 ITU 構造 및 機能 調整의 未決된 이슈

1. 選出 職員의 問題

1.2. 選出 職員의 再選 制限

현재 ITU의 선출 직원으로는 〈표-7〉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총장, 사무차장, CCIR, CCITT 위원장 그리고 IFRB 위원(5)등이 있는데, 이중 미국인 출신의 CCIR 위원장인 Mr. Kirby와 같은 일부 직원은 2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Nice 전권위원회는 상기 선출 직원의 재선이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나, HLC는 전권위원회가 5-6년에서 4년 주기로 단축됨에 따라 1회 혹은 2회의 재선 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제안했다.

〈표-7〉 ITU 선출직원의 현황

ITU 기관	선 출 직 원			선출년도(임기)
	직 책	이 름	국 적	
사 무 총 국	사 무 총 장	P. Tarjanne	핀 란 드	1989(1)
	사 무 차 장	J. Jipguep	카 메 룬	1982(2)
CCITT	위 원 장	T. Irmer	독 일	1982(2)
CCIR	위 원 장	R. Kirby	미 국	1952(5)
IFRB	위 원	Y. Kurihara ^{a)}	일 본	1989(1)
		W. Bellchambers	영 국	1982(2)
		G. Brooks	캐 나 다	1982(2)
		V. Kozlov	소 련	1982(2)
		Harbi ^{b)}	알 제 리 아	1989(1)

a) 他 日本人으로 대체

b) 모로코의 Berrada 후임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서는 특정인의 장기 재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선출 직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선은 1회로 제한하도록 제2차 회의에서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기본안을 받아들여 기본적으로 1회만 재선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4년으로 전권위원회의 개최주기를 단축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기 위하여 APP에서 전체 회원국들로 하여금 1회 혹은 2회의 제한된 재선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1.2. 選出 職員의 關位 및 再選 規定

의장의 개정초안에는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과 달리 각국 국장의 월위시 잔여기간 동안의 후임자로서 지명된 경우에 그 재임기간이 재선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우리나라는 “특정 선출직의 월위시 후임자로 지명되어 잔여임기를 재임한 경우는 재선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이 규정하도록” 제안했고, 인도네시아도 동 문제에 대해 유사하게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항(협약 6F-JA)을 검토하기 위해 韓國을 중심으로 ITU 법률자문관 등의 보조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선출 직원이 월위시 후임자로 재임한 잔여기간은 선거 및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시켰다(Dt/13).

1.3. 選出職의 國籍의 重複 問題

韓國은 ITU의 선출 직원(5인)과 무선규칙위원회(RRB) 위원(9) 국적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많은 지역 및 회원국 출신이 선출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선출 직원과 RRB 위원은 각각 다른 나라의 출신이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중국과 같이 현재 ITU에 선출 직원을 배출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동조했다.

동 제안의 합축성을 파악한 의장이 다음 2가지 案에 대해 舉手 投票를 실시했다.

- ① 선출 직원과 RRB 위원의 국적이 각각 달라야 함.
- ② 선출 직원과 RRB 위원의 국적이 중복되어도 무방함.

투표의 실시 결과는 제안 ①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으나, 영국이 제③안으로 ‘무선통신분야의 국장과 RRB 위원의 국적만 달리한다’를 제기했고 모로코가 지지 발언을 했다.

이는 곧, 개도국 및 선출직을 배출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제1안을 선호하고 인력이 풍부한 일부 선진국들은 제2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안은 위원들의 자질을 고려함과 동시에 선진국들의 선출 가능성 확대를 염두에 둔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APP 혹은 정기 전권위원회에서 재론되도록 결의되었다.

2. 地域(Region)의 概念 定義 問題

현재 ITU에서 관리이사국과 IFRB 위원 선출시 적용되는 지역구분은 A(미주), B(서유럽), C(동유럽), D(아프리카), E(아시아, 오세아니아)등 5개 지역으로 되고, 주파수 배분을 위해서는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ITU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9인의 무선규칙위원회 위원 선출시 어떤 지역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현재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유럽의 개념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표준화분야에서 ITU와 지역기구와의 관계설정 문제도 매우 민감한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선출직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표준화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地域’이라는 개념을 지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했다.

지역에 대한 개념이 재정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각국간의 정치·경제·지리적인 민감한 이해관계가 함축되었으므로, 필요시 1992년 APP 혹은 1994년 정기 전권위원회에서 재론하도록 결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APP의 임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Kyoto 정기 전권위원회에서나 재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다원적인 연구 및 전략이 지금

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概念을 정의한 附屬書의 統合 問題

韓國은 제2차 초안반 회의에서 “기존 헌장 및 협약 부속서에 각기 분리·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일괄화시켜 기본법을 간소화시키자”고 제안했다.

동 제안에 대해서 많은 대표들이 동의를 했으나, 일본은 법적 지위(Legal Status)가 다른 헌장 혹은 협약의 개정에 수반되는 부속서의 개념을 개정할 경우 어느 법적 지위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대로 헌장 및 협약별로 각기 분리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필요시 차기 추가 혹은 정기 전권위원회에서 재론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의되었다.

4. 特定 職員에 대한 呼稱의 中性化 問題

韓國은 제2차 초안반 회의에서 “기본 헌장 및 협약에 男性 위주로 표현된 특정 자리에 대한 呼稱(예, He 혹은 Chairman 등)을 중성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각국대표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 ① 각 조항에 표현된 단어들의 의미를 중성으로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② 많은 조항에서 사용되어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회의 시간이 절대 부족했으며;
- ③ 불어 및 스페인어에는 문장상 Chairman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President로서 이미 중성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동 이슈의 필요성에 대한 제2차 회의의 결과를 APP에 보고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1994년 정기 전권위원회에서 決議(Resolution)로 채택하도록 제의하는 한편, ITU의 법률자문가로 하여금 유엔 및 다른 유엔전문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건의를 하도록 결의했다.

5. ‘民間(private)’이란 용어의 削除 問題

전통적으로 전기통신은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기관으로서 정부가 인정한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ITU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인정된 민간 운영업체(PROAs) 혹은 민간 운영업체(POAs)라고 각기 분리·정의했었으나, 전기통신환경이 변하면서 정부 혹은 정부기관으로서 규제나 정책과 분리되어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RPOAs 및 POAs에서 의미하는 대로 민간(private) 뿐만 아니라 공사(public) 혹은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도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private’이라는 용어를 각 조항에서 삭제하고 현장 및 협약 부속서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부속서의 개념 정의에 ‘a governmental establishment or agency’란 구절을 팔호화시켜 APP에서 삭제하거나 새롭게 재정의하도록 결의했다.

6. 憲章 및 協約의 效力 發生 問題

6.1. 개정될 현장 및 협약의 효력 발생時期

Nice(1989) 현장 및 협약에서 규정한대로 55개국의 비준이 있어야만 동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시키게 될 경우, 개정된 법과 효력 발생간의 時差가 커질 것이며, 이는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Nairobi(1982) 협약의 규정대로 지정된 날짜(예, 1994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여 APP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했다.

6.2. 개정된 현장 및 협약의 향후 개정시 효력 발생

향후 APP에서 개정한 현장 및 협약의 여러 조항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회원국들이 개정된 규정을 개별적으로 비준할 것인지 개정된 여러 조항을 하나로서 일괄적(package)으로 비준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각기 개정된 여러 조항을 일괄적으로 비준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 이유로서는 주로 회원국의 權利 혹은 主權 문제 때문이다. 사

실, 1988년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의 개정서 1.7조(목적 및 범위)와 9조(특별 협정)의 경우와 같이 각국의 利害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2개의 규정을 동시에 'package'로서 개정해야 할 때가 있다.

결국, 효력 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회원국가의 정족수(예, 3/4 혹은 2/3 등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비준 및 동의를 한 국가들 사이에서 개정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개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일괄적 비준 문제는 APP에서 재론하도록 결의했다.

V. 追加全權委員會의 暫定 議題

1992는 12월 7~22일 사이에 개최될 APP에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련의 회의 및 활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결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2차 준비 초안반 회의에서 개정한 현장과 협약의 최종 결정

2. 개발국의 국장 선출

제46차 관리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면, 1992년 12월 개최될 APP에서 憲章 및 協約의 개정과 함께 개편될 ITU의 조직에 해당되는 선출 직원의 선거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출 직원은 무선통신국, 표준화국, 개발국의 각 局長(3)과 무선규칙위원회 위원(9) 등 총 12인이 되나, 14일동안 개최되는 APP에서 대규모로 개편되는 현장·협약의 심의도 쉽지 않는 과제인데, 상당한 정치·외교적 활동을 요하는 12인의 선출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또한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될 기관의 長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므로, 현재 공석으로서 사무총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개발국의 국장만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요청하는 공문이 각 주관청에 이미 발송되었으며,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2인, 아시아 지역에서 현 APT 사무총장이 출마할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APT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될 예정이므로 동 지역통신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혹은 기관은 주관청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도 아울러 권하고 싶다. 향후 한국에서도 아·태지역 및 ITU를 통해 범세계적인 통신개발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관심 제고뿐 아니라 관련 기관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후원과 인재 양성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논의될 세부 규정 및 이슈:

종 류	의 제	비 고
憲章/協約	① 현장 & 협약의 Annex 통합 문제 ② 呼稱의 중성화 문제 ③ 무선규칙위원회 위원의 면책 & 특권 의 부여 문제	동 위원은 他선출직과 位 相이 相異
憲 章	④ 선출직 직원과 무선규칙위원회의 책임 횟수 및 국적의 중복 여부 문제 ⑤ 사무총장실內 사업자문반(BAF)의 조 문화 문제 ⑥ 'private' 용어 삭제에 따른 개념정의 문제(Annex) ⑦ 현장 및 협약의 改正時 효력 발생 문 제 ⑧ 개정될 동 현장 및 협약의 발효시기 문제	각 분야의 자문반 조문화 참고 1994. 7. 1로 지정
協 約	⑨ '절차 규정(협약 3조)' 및 '회의의 신임 장(협약 15조)'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 부록화 ⑩ 이사회 기능의 조항 간소화 문제	분리시 전권위원회에서 제·개정은 가능하나, 국제 조약 권한은 상실

VI. 提 言

1865년 설립이래 끊임없이 구조 및 기능이 진화해온 ITU가 1990년대 당면한 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현대 전기통신 환경에서 국제기구가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몸부림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란 그 시대의 정치·경제·외교 등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유엔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운영 방법으로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과 시대적인 요구에 적응하는 방법, 그리고 최악의 경우 도퇴되는 방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1980년대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회원국—특히, 선진국—의 관심이 저조해지는 일반적인 현상과 대조적으로, 160여개 회원국들의 관심속에서 ITU는 다른 어떠한 기구 보다 능동적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사실, ITU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動機는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기통신이라는 분야가 당면한 특성으로서 관련 기관들이 기술의 혁신 및 중요성의 인식, 쌍무적 차원에서 기술이전의 한계,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의 불가피성, 그리고 정보·통신이 다른 경제발전에 핵심적 하부구조라는 인식 등이 提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 — 특히, 이를 민간업체 — 들의 태도와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업체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ITU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럼, 어떤 기관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가? ITU의 구조개편 이후 참여해야 할 기관은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ITU의 上下位 회의 및 법적 체계와는 관계없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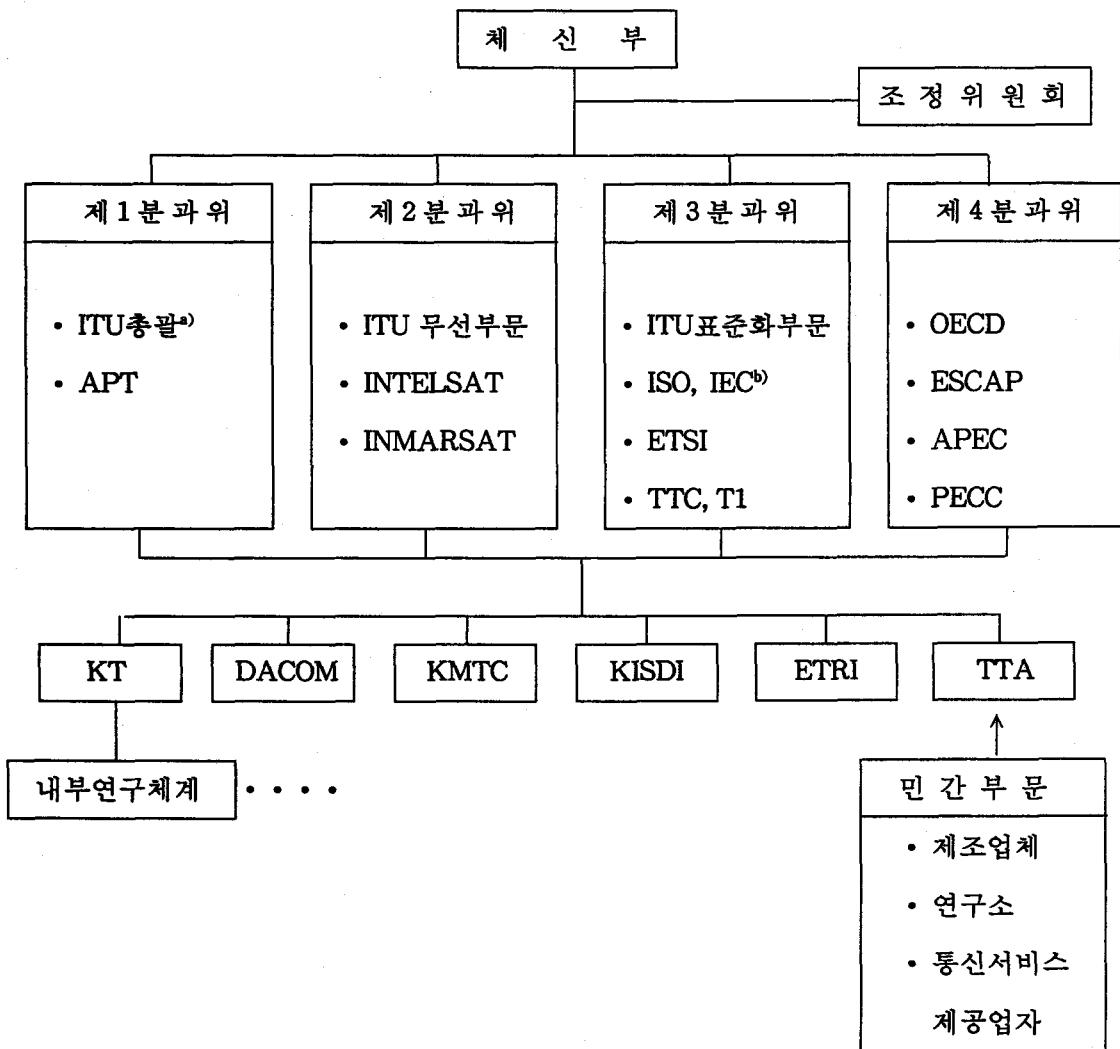
〈표-8〉 ITU의 구조조정 後 국내 관련 기관의 참여 현황

조정 前	조정 後		참여 자격 ^{a)}
전권위원회의	전권위원회의		정부 : 외무부 & 체신부 RPOAs : 한국통신 & 데이콤 SIOs : (현재 - 없음) 기타 : 연구소(ETRI/KISDI)
관리이사회	이사회		정부 : 외무부 & 체신부
CCITT & CCIR	표준화분야	정기총회 자문반 연구반	체신부 중심 체신부, RPOAs, 제조업체 ^{b)} 체신부, RPOAs, 제조업체 연구소
세계전신전화 주관청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정부, RPOAs, 연구소
CCIR/IFRB &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무선통신분야	세계/지역회의 자문반 연구반	체신부 중심 체신부, RPOAs, 제조업체 체신부, RPOAs, 제조업체 연구소
개 발 국	개발분야	세계/지역회의 자문위원회 연구반	체신부 & RPOAs 중심 개인 (전기통신관련) 체신부 & RPOAs 중심
사무총국	사무총국	기조과 자문단 TELECOM-정책 전시	사무총장의 지명 ^{c)} RPOAs & 제조업체 중심 체신부 & 연구소 중심 RPOAs & 제조업체 중심

- a) 각 기관별 참여자격 혹은 대표단(delegation)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정부대표(delegate), RPOAs 혹은 정부를 대신한 RPOAs(representatives), 외 경 우에 따라 고문(adviser), 외교관(attachés) 및 통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ITU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entities)은 재정 혹은 발전관계 기관, 전기통신 문제를 다루는 다른 기관, 지역 및 다른 국제 전기통신 관련 재정 혹은 발전 기구 등이 있다. (협약 7D조)
- b)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체는 현재 SIOs의 자격으로 주로 연구반 및 기타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c) 아직 미정.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민간 업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복잡한 ITU와 다른 통신 관계 국제 및 지역 기구에 대한 업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처리 및 대응하기 위해, 현재 체신부를 중심으로 <표-9>에서와 같은 체계로서 관련기관의 기능을 적극 후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와 자체내 활동을 활성화시켜 21세기를 맞이하는 韓國의 통신이 국내·지역·세계적으로 기술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고, ITU 및 관련 기구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제언 및 권고를 바란다.

〈표-9〉 국제기구 상시연구체계 방안



a) 외무부의 협조 요구됨.

b) 공진청관계자의 참여 요구됨.

참고 문헌

1. 김 은주, OECD의 ICCP 위원회 활동 및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1. 12.
2. _____, ITU의 구조조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1. 12.
3. 김 재철, “전환기의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정보통신문명과 문화, 한국통신학회 1992. 4. 22.
4. 서 보현, WARC-92에 따른 각국정책파악 및 대응방안수립, 통신개발연구원, 1991. 12.
5. Eun-Ju Kim, Dynamic Interlinkage Between The R. O. Korea and the ITU Through Evolving Telecommunications Issue-Structure, The City University, London, 1990.

〈ITU PUBLICATIONS & DOCUMENTS〉

1.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1982.
2. _____,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Melbourne, 1988.
3. _____,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ice, 1989.
4. _____,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Report of the High Level Committee to review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the ITU), Geneva, April 1991.
5. _____, Draft for a revised CONSTITUTION & CONVENTION of the ITU, Geneva, 13 December—21 March 1992 (4차례 개정안).
6. _____, Document 6 & 8, Drafting Group for the elaboration of draft texts for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related matters (Ac Res. 1021), First Session, Geneva, 9—13 December 1991.
7. _____, Document 12 & 13, Drafting Group for the elaboration of draft texts for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related matters (Ac Res. 1021), Second

Session, Geneva, 16–20 March 1992.

8. , Dt/3–17:Drafting Group for the elaboration of draft texts for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 related matters (AC Res. 1021), Second Session, Geneva, 16–20 March 1992.